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의2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국 세 환 급 금 충 당 청 구 (동 의) 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
청구인	상호(법인명)			사업자등록번호				
	성명(대표자)			주민등록번호				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
구분	세목	연도·기분	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 교육세	가산금	환급가산금	
국세환급금 내역								
	계							
구분	전자납부번호		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 교육세	가산금	비고	
충당청구 (동의)내역								
	계							
잔액								

※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(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.

「국세기본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생년월일:) 관계(직책):

주 소 전화번호 :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	수수료
	1. 청구인 신분증 사본 1부 2. 위임장 원본 1부 ※ 1번과 2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	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